

대전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15773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1577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10256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00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10256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고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제3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이 사건 입찰보증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불이행 시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9 내지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피고와 같은 중소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피고와 같은 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통상 발주처로부터 수령하는 선수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아야 하고,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 입찰 사업의 낙찰업체는 발주기관에 계약보증금 혹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은 피고 또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려고 했던 점, ③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피고의 재정상황과 당시 조선업 경기 불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아가 그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거절하였던 점, ④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피고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었기에 뜻하지 않게 원고와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던 점, ⑤ 이 사건 입찰을 진행한 원고 산하 조달청은 피고가 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새로운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과 약 1개월가량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었을 뿐인 점,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낙찰자가 계약체결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외에도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제재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실제 조달청장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점, ⑦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조선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긴급 발주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낙찰받은 조선업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위 정책목적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입찰보증금 2,115,000,000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1/4 상당액인 528,7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입독촉고지서를 통해 입찰보증금 납부기한으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